

안 내 문

발 신 자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중앙2길 58, 1층
수 신 자 : 효사랑재가노인요양센터 이용 수급자 및 보호자
(참 조) :
제 목 : 2024년 수가 인상에 관한 공문

- 귀하의 데에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 정부 방침에 따라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방문요양, 방문목욕도 인상이 됩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01.)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등급	월 한도액	월별 이용 횟수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9% 감경대상자	6%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1등급	2,069,900 원	31일	310,485 원	186,291 원	124,194 원
2등급	1,869,600 원	28일	280,440 원	168,264 원	112,176 원
3등급	1,455,800 원	26일	218,370 원	131,022 원	87,348 원
4등급	1,341,800 원	24일	201,270원	120,762 원	80,508 원
5등급	1,151,600 원	180분(21일)	172,740 원	103,644 원	69,096 원
인지지원 등급	643,700 원	-	96,555 원	57,933 원	38,622 원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20분 이상	41,380	210분 이상	60,530
60분 이상	24,120	150분 이상	48,250	240분 이상	66,770
90분 이상	32,510	180분 이상	54,32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표4]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041)841-6261, Fax : 041)841-6596
☎ : 010-5401-6615